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5- 호

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
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"경리관"은 2014. 5. 28.(법률 제12687호) 「지방재정법」 제91조의 개정으로 "재무관"으로 변경되었음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변경
- 다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변경

2. 주요내용

- 가. "기금의 회계관" 관한 규정 중 "경리관"을 "재무관"으로 변경함 (안 제11조제3항)
- 나. "해당연도"를 "해당 연도"로 변경(안 제13조제2항제2호)
- 다. "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·세출예산서와"를

"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·세출예산안과"로,

"심의·의결"을 "의결"로 변경(안 제13조제3항)

- 라. "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"를 "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"로 "심의·의결"을 "의결"로 변경(안 제14조제3항)
- 마. "대하여"를 "대해서"로 변경(안 제15조제2항)
- 바. "인정하는"을 인정할"로 변경(안 제16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<u>2015년 12월</u> <u>17일까지</u>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(참조 생활보장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보장과(전화: 02-901-6672, FAX: 02-901-6660, E-mail: gorilafirst@gangbu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
- 라. 보내실 곳: (우편번호 01071)
 -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(수유동)
- 마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강북구 홈페이지 입법예고란(http://www.gangbuk.go.kr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